



수신 : 1. 재무부 장관 Dinh Tien Dung
2. 재무부 차관 Vu Thi Mai
3. 재무부 조세정책국장 Pham Dinh Thi
4. 재무부 국세총국장
5. 재무부 관세총국장

2020. 1. 17

제목 : 수출용 원재료 외주가공분 면세 부인 관련 산업무역부의 답신공문에

대한 KOCHAM 건의문

1. 귀 기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OCHAM 은 지난 2019 년 12 월 2 일 귀 기관을 비롯한, 베트남 관계 기관에 보내 드렸던
“수출용 원재료 외주가공분 면세 부인에 대한 KOCHAM 탄원서(1921/HHTMHQ)”에 대하여,
산업무역부로부터 답신 공문(07/CN-CNHT)(2020 년 1 월 10 일자 발송)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3. 그리고 산업무역부로부터 받은 해당 답신 공문(07/CN-CNHT)을 통하여, 현재 재무부는
2016/9/1 일 제정 134/2016/ND-CP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여 정부에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 “수출품을 생산업체가 외주가공을 맡길 수 있지만 그 가공업체는
수입업체가 100% 소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4. 하지만, 현재 베트남의 일반적인 제조 관행상 수출용 원재료 등을 면세로 수입하여 수출품을 100% 자가 생산하거나, 가공업체를 100%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베트남 내 활동하는 거의 모든 제조 기업들은 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업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 회사에 일부 공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 내용이 추가 될 경우, 그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수 많은 수출 제조 기업들이 경영에 타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베트남 제조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품소재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베트남의 제조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전체 경제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참은 FDI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베트남 수출 제조 기업을 대신하여, 개정 시행령 내에 해당 내용이 추가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며, 본 공문을 통하여 귀 기관에 해당 개정내용으로 추후 기업들이 겪게 될 여러가지 어려움과 베트남 전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전향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수출 제조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 규정을 삭제하고, 면세 적용 범위 대상이 되는 외주임가공 업체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을 구분하지 말고 소유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흥수